

교수업적평가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수의 학문적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며 대학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임으로써 본 대학의 교육이념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교수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지칭한다.

제2조 (원칙) ① 연구, 교육, 봉사 등 교수의 활동 영역 전체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며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모든 평가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하에 정량평가제를 적용한다. 단, 산학협력영역을 별도로 두며, 산학협력과 관련된 연구, 교육, 봉사 등의 활동을 모두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정년제 전임교원과 계약제 전임교원은 역할 및 임무에 따라 평가영역 및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교수업적평가위원회) ① 교수업적평가제 시행을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단과대학장 및 아트앤디자인스쿨학부장,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임명한 14인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구성이 학문분야별로 고른 분포가 되도록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 평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평가대상기간) 평가대상기간은 전년도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 (평가절차) ① 교수는 해당 평가대상기간의 업적현황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매년 2월말까지 교무처 교무팀을 거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이 기한내 실적물 원본이나 게재/전시/발표 예정증명서, 계약서, 위촉장 등 해당 업적에 관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업적은 일단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본 규정 제7조 2항의 절차에 의해 추가 평가한다.

② 업적 해당업무에 관한 분장은 연구영역은 교무처 교무팀에서 담당하며, 교육/봉사/산학협력 영역은 해당부서에서 항목별로 각각 담당한다.

③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업적현황표와 증빙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3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하고, 개별 교수에게 통보한다.

④ 업적물 원본 대신 게재/발표/전시 예정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업적 승인을 받은 경우, 업적물 원본이 정해진 기한(2월말 또는 8월말)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업적 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⑤ 승진심사 신청에 필요한 모든 업적은 승진심사 신청 학기 종료 4개월 이전(4월말 또는 10월 말)에 발표(게재)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평가영역) ① 평가영역은 교육, 연구, 봉사, 산학협력으로 구성한다.

② 영역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배점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7조 (평가기준일) ① 업적별 평가기준일은 논문 및 저서의 발간일, 학술대회 시작일, 전시

시작일 등 업적 발생일로 한다. 다만 평가 시에 최종 실적물이 미비된 것은 주관기관의 게재 예정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평가받을 수 있다. 단, 예정된 업적 발생일 이내에 최종 실적물이 나오지 않는 경우, 해당업적 승인은 취소된다.

② 평가에서 누락된 업적은 추가 평가하여 해당년도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추가 업적 인정이 이미 이루어진 해당 교원의 승진 또는 재임용 등 각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8조 (중복인정 금지) 동일한 내용의 논문, 저서, 학술연구보고서, 학술회의 활동, 창작, 특허, 전시회출품 및 예술품 제작 분야의 업적은 중복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부여한다.

제9조 (평가결과의 활용) 교수업적평가 결과는 교수의 승진, 재임용, 연구비 지원, 호봉승급, 연구년 수혜교원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정년제 전임교원의 교수 구분 선택) ① 정년제 전임교원은 일반교수, 교육집중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로 구분한다. 교육집중교수와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의 선택은 매학년도 초 교무처 교무팀에 신청하여, 선정 결과는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평가대상기간 중 교수의 구분을 달리 하였을 때에는 각 교수 구분의 소요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재임용 및 승진에 필요한 소요점수가 된다. 단, 교육집중교수에서 일반교수로(또는 일반교수에서 교육집중교수로)의 변경은 동 직급에 대한 승진 평가대상기간 중 1회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의 변경 횟수 제한은 없다.

제11조 (연간소요점수) ① 정년제 전임교원의 구분별 연간 소요점수는 [별표]와 같다. 계약제 전임교원의 임무에 따른 소요점수는 개별 계약조건을 따른다.

② 정년제 전임교원이 교수구분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요총점 이상의 점수 및 영역별 소요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여야 한다.

③ 신입교원의 첫 승진에 필요한 연간 소요점수 중 봉사항목의 점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교원의 재임용 또는 승진에 필요한 연간 소요점수에서 교육영역의 마지막 학기 점수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정직 기간에는 소요점수 변경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2조 (정년제 교원 정기평가) ① 정년제 전임교원은 영역별 2년간의 소요점수 충족여부를 2년마다 평가하며, 소요점수 미충족 교원은 호봉승급을 제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호봉승급의 제한 기간은 12개월로 한다. 단, 호봉승급이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호봉승급이 중지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소급하지 않는다.

③ 정기평가 시행 학년도 3월 1일 기준으로 만64세 이상 교원과 본교 임용기간 2년 미만 교원은 본 정기평가를 받지 않는다.

제13조 (보상제도) 교수의 연구, 교육, 산학협력 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내외 봉사를 장려하기 위해 평가 우수 교수에 대한 보상제도를 둔다.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제14조 (재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수는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재심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본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재심시 교수업적평가위원회는 교수 본인의 출석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업적평가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98 제9차 교무위원회>
(제13. 16. 17. 18, 21조 개정<'98 제14차 교무위원회>) (제5조②항, 제11조 1.3.4개정<제19차 교무위원회>) (제3조 ②항, 제5조①, ②항, 제11조 3호, 4호 개정, 제11조 7호 신설, 제13조 1호 다 개정, 라 신설, 2호 가 개정, 다 삭제, 제14조 1호 개정, 2호 삭제, 3호 내지 4호를 2호 내지 3호로 변경하고 4호 신설 <'99, 제7차 교무위원회>)
- (2) (연구실적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일자를 전후로 심사기간이 나뉘는 경우 연구실적의 평가는 [별표 3]의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하며 교육 및 봉사항목은 시행일자 이후의 것만 평가한다. 단, 1999년도 승진, 재임용심사 대상자는 1998년 9월 1일부터 업적평가를 시행한다.
- (3) (초임 재임용 평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1998년 9월 1일 이전에 부임한 교원 중 초임 재임용 대상교원은 [별표 3]의 일반 재임용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업적평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7조 개정 <'99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 이후 업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 5, 6, 7, 8, 9, 10, 11, 13, 14, 19, 21조 개정, [별표] 1, 2, 3 개정 <'00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 [별표 1] 개정 <'01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3호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제3조 ②항, 제6조 ③, ④항, 제9조, 제10조 ④항, 제11조 2호 내지 7호, 제13조 ①항 개정, 3호 삭제, 5호 내지 7호, ④항 신설, 제14조 ②항 4호 신설, [별표 1] 및 [별표 2] 개정<'02 제16차 교무위원회>,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23조 및 [별표 1] 개정<'05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별표 5]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하며, 2006학년도는 각 대학별 기준의 학술지 2편 이상을 1편 이상으로 하향 적용한다. (제21조 개정<'04 제19차 교무위원회>, 제18조 제5항 신설<'05 제1차 교무위원회>, 제11조 및 제13조 개정, 제18조의2 신설, [별표 1] 개정, [별표 2] 개정, [별표 3] 삭제, [별표 5] 신설<'05. 제1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개정은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 ④항 개정<'05 제23차 교무위원회>)
- (2) (시행일) 이 개정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8조의2 개정<'05 제23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3조, [별표 1-2] 개정<2006 제21차 교무위원회>)
- (2) (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7학년도 1학기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3) (표1-2의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업적평가점수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3조 1항 1호 가, [별표 1-2] 개정 <2006 제25차 교무위원회>)
- (2) (표 1-2의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업적평가점수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별표5 개정 <2007 제5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6조 ⑤항, 별표2, 별표5 개정 <2007 제22차 교무위원회>)
- (2) (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08학년도 1학기 승진 및 재임용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4호, 별표1 개정 <2008 제 22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 2항, 제5조, 제6조 개정, 3, 4항 삭제, 제9조 ~ 25조 개정 및 조변경, 제25조 2, 3항 삭제, 별표1, 별표1의 2, 별표4 개정 <2010 제7차 교무위원회>)
- (2) (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 이후 업적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010 제7차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3항 개정 <2010 제24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제1항 개정, 동조 제2항 신설, 동조 제3항 삭제,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항번호 변경, 제10조 제2항 개정, 동조 제3항 신설, 동조 제3항 내지 제5항을 제4항 내지 제6항으로 항번호 변경, 제11조 제5항 삭제, 동조 제10항 개정, 제20조 삭제, [별표 1] 1, [별표 2] 1, 2 개정, [별표 5] 삭제 <2011 제4차 교무위원회>)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7항 개정 <2011 제15차 교무위원회>)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봉사영역 교내봉사 항목 중 대학교캠퍼스 아카데미 강좌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3조, 제13조제1항제9호 및 제14호,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개정, 제13조제4항 신설, 제15조 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제21조제1항, [별표 1]의 1, 2, 3 개정 <2011 제20차 교무위원회>)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1조 개정 <2012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6조제6항, 제1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 개정, 동조동항제3호 삭제, 제11조제4항제4호, 동조제7항, 제19조제3항, [별표 1]의 1, [별표 2]의 2 개정 <2012 제12차 교무위원회>)
- 제2조(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9조제3항은 2013학년도 1학기 승진/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8호, 동조동항제14호, 제13조제3항, [별표 1]의 2, [별표 1의 2] 개정 <2013 제13차 교무위원회>)
- 제2조(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적평가점수는 본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11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개정

<2014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3조제4항제2호, 제23조, [별표1]의 2 개정, [별표6] 신설 <2014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의 1 개정 <2014 제1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표1] 개정 <2014 제2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6조제6항, [별표4] 개정 <2014 제27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11조제4항제5호 신설, [별표1] 개정 <2015 제8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책임시수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1, [별표 1]의 3, [별표 4] 개정 <2016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 개정, 제5장제17조, 제18조 신설, 제19조 내지 제27조 조번호 변경, 제20조, 제24조, 제25조, [별표1], [별표1의2], [별표2], [별표4], [별표6] 개정 <2016 제24차 교무위원회>)

제2조(업적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가. [별표1]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승진/재임용 소요기간이 시작되는 전임교원과 정년보장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나. 승진/재임용 소요기간 중에 있는 전임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선택한 경우에는 [별표1]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1항 및 제3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2] 개정 <2017 제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항 신설,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별표1의2] 개정 <2018 제13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면 개정 <2019 제4차 교무위원회>)
제2조(정년제 교원 정기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정년제 교원 정기평가는 본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에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5항 신설, 제12조제3항 개정 <2019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0조 제1항 개정 <2020 제3차 교무위원회>)

[별표]

정년제 전임교원 교수구분별 연간 소요점수

교수구분	영 역			
	교 육	연 구	봉 사	산학협력
일반교수	500	400	100	-
교육집중교수	700	200	100	-
산학협력중점교수(지정형)	500	200	100	200

주1) 교육집중교수의 자격요건

- 1) 정년제 전임교원 중 최초 임용후 2년이 지난 교원으로서 최근 4학기(2년)의 강의평가 평균이 소속단과대학 상위 80%이내인 교원
- 2) <삭제>
- 3) 연구년 수혜기간의 소요점수는 일반교수 기준을 적용하며, 2학기부터 연구년을 수혜받거나 2학기 연구년 복귀 교원의 경우, 연구년 기간이 아닌 학기에 대해 연간 소요점수의 1/2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육집중교수를 신청할 수 있다.

주2) 계약제 및 비정년제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임용계약에 정한 것으로 한다.

주3) 일반교수와 교육집중교수가 취득한 산학협력교육점수는 교육영역에, 산학협력연구점수는 연구영역에, 산학협력봉사점수는 봉사영역에 합산하여 인정된다. 산학협력중점교수가 취득한 산학협력영역의 점수는 그대로 산학협력영역점수로 인정된다.

주4)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며, 업적평가결과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청한 학년도에 산학협력영역 소요점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학년도는 일반교수로 인정한다.